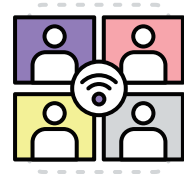


2023년 한국오리협회 제3회(긴급) 이사회

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현황 공유 CCTV 설치대상 확대 등 대응방안 논의



한국오리협회는 지난 7월 11일 오후 1시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(2023.4.18)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. 특히, 개정 내용 중 CCTV 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방역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있어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사회를 개최했다.



강화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(기존) 닭·오리 농장의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사람,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임상 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30일 이상 저장·보관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

(개정) 닭·오리·칠면조·거위·타조·메추리·꿩·기러기 농장의 각 출입구, 방역실의 각 출입구, 사육시설의 각 출입구 및 사육시설의 내부에 사람, 차량 및 동물의 출입, 법 제17조의6에 따른 방역기준의 준수 여부 및 가축의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30일 이상 저장·보관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(중계·종오리장, 부화장은 기존과 동일) (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)

농림축산식품부는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강화되는 방역시설 등 가금농가별 설치현황을 조사하고 있고 실태조사 이후 지원사업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기 교부된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비에서 우선 설치 및 추가 지원 필요 시 확대 방안 검토할 예정이다.

협회는 이사회 전 전문 변호사의 구두 자문을 실시했다. 변호사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.

- 현행의 CCTV가 가금농가 '방역시설'의 기준에 있으나 방역시설로 볼 수 있을지 여부(CCTV의 설치 및 확인이 방역을 위한 목적인지 여부)가 의문이며,
- 가축염병 예방법 상 정부가 질병발생 시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농가는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나 평상시 일반 농가를 대상으로 CCTV를 확인하고 제재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위임 입법 한도를 벗어나 과도한 처분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었다.

향후 CCTV의 문제점 등에 대한 정식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자문 이후 행정 소송을 실시하기로 했다.